

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12조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룡시토지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
2. 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3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조 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, 시민봉사과장, 도시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회 의원
2.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 이면서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4조 (임기)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위원의 해촉) ①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2.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
3.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
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5. 기타 위원으로써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- 제7조 (회의)** ①위원장은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8조 (의견청취 등)**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9조 (간사 등)**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- ②간사는 토지관리담당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.
- 제10조 (회의록)**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11조 (실비변상)**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계룡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2조 (시행규칙)**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